

인터넷에서 연말정산 가이드를



매년 치르면서도 복잡하게 헷갈리는 연말정산. 이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국세청의 웹사이트(nt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이버세무서 봉급생활자와 세금 메뉴를 차례로 찾아 들어가면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요령을 알려준다.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의 빈칸을 채워나가면 세액까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야후코리아 세금센터(kr.taxes.yahoo.com) 삼일인포마인(www.samilinfomine.com) 투나인정보기술(www.ezsemu.com) 등도 연말정산 요령안내와 자동세액계산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앙이아이피(www.bizline.co.kr)는 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가 진행하는 무료 사이버특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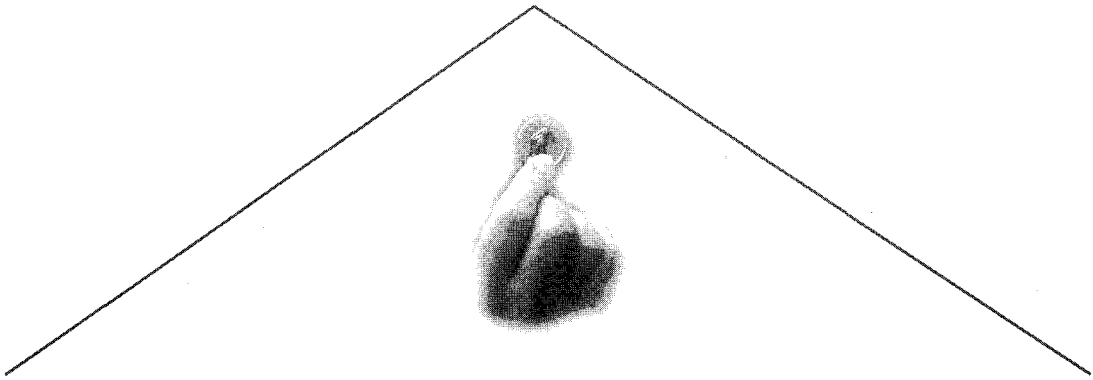
동양화재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슈월드(www.insuworld.co.kr)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바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행기는 만큼 이득이다

기부금 범위:

작년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됐으나 올해는 몇가지가 추가됐다. 사회복지활동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도 대상이 되지만 그의 불우이웃돕기금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공제된다. 유료 양로시



설, 노인교실에 기부한 금품도 10% 한도적용을 받는다.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의 10%한도로 크게 확대되며 노동조합비와 교원단체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자금소득공제:

작년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마련저축 가입자는 저축부금불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월말 이전 이미 가입된 주택청약부금은 경과규정으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을 넘지 않으면 11월과 12월 불입액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신설돼 저당차입금의 1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저축부금 불입액과 이자상환액 등 전체주택자금 소득공제는 300만원이 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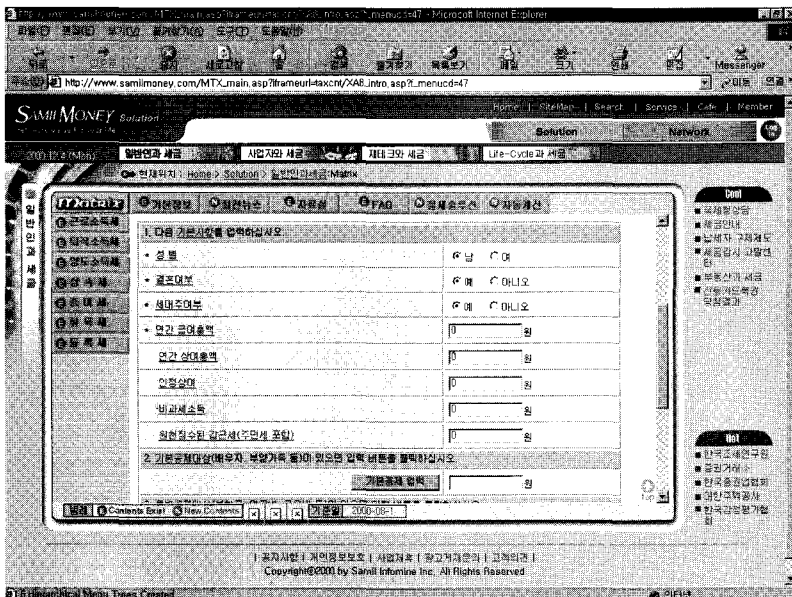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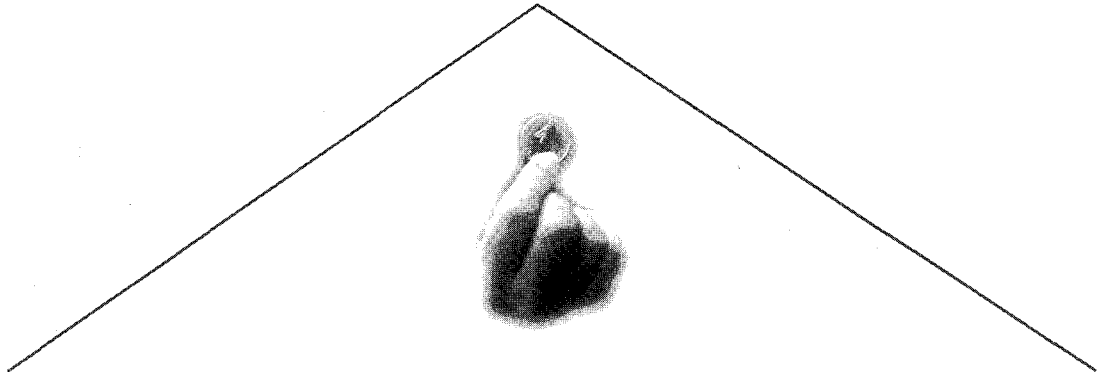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상향조

정됐다. 국외근로소득이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250만원이다. 그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가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소득자가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올해





중 만 20세가 되는 자녀 1명을 가졌을 경우 기본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모두 5명이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씩 500만원이다.

주민등록이 따로인 부모는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해당)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계산: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다.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은 1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90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600만원)의 10%만을 공제해주므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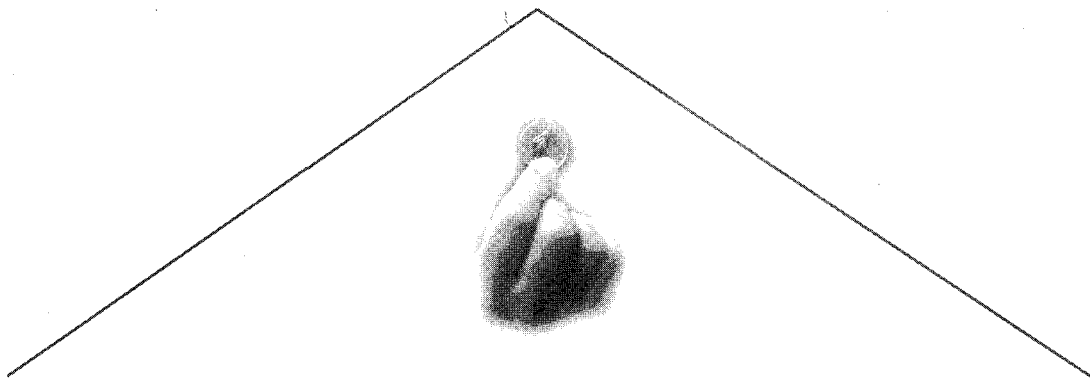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3000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5%를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 및 출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의시장 등에서의 주식 매입분은 제외된다.



근로자주식저축 5% 세액공제 시행

정부와 여당은 증시활성화를 위해 '부활'하기로 한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증권사 주식저축 △투신사 수익증권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



의 뮤추얼펀드 △은행 신탁상품 등이며 세액공제율은 정부원안대로 5%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저축은 급여에 관계없이 봉급을 받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저축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납입방식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가입자가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경우 저축액의 30% 이상(평균잔액 기준)을 반드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상품은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다음달에 도입되면 가입자는 내년 1월의 올해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최고 1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 2002년 1월에 이뤄지는 내년분 연말정산 때도 최고 1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증시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인당 저축한도를 과거 두차례 시행 때보다 크게 늘리고 급여제한을 없앴으며 투자대상을 뮤추얼펀드와 은행신탁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며 "2조~3조원의 신규자금이 증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

사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 한스, 중앙, 영남증권 등 4개 부실증권사가 통합해 출범하는 하나로증권의 영업을 다음달 초 시작하도록 했다.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